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77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윤상현 · 김선교 · 고동진
조배숙 · 광규택 · 김태규
최보운 · 조지연 · 우재준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05호로 지난 2024년 12월 공포되어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20605호는 부칙 제2조제1항에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음. 따라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에도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됨으로써 개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 제20605호 시행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도록 해당 부칙조

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그 계속 중인 법원”을 “인천고등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 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u>그 계속 중인 법원의</u> 관할로 한다. ② ~ ④ (생 략)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 ----- ----- ----- -----<u>인천고등법원</u>----- -----. ② ~ ④ (현행과 같음)